# 지정 · 변경 신청서

① 지정 ☑ ② 변경 ☐

※ 뒷면의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작성하시고, ☐란에는 ✔표시하여 주십시오.

## 1. 인적사항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③ 성 명 | 홍 길 동 | ④ 생 년 월 일 | 1955 년 1 월 1 일 |
| 자 택 전 화 번 호 | (02 ) 123 - 4567 | 휴대전화번호 | (010) 1234-5678 |

## 2. 지정 · 변경 사항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⑤ 급 여 종 류 | | ☐ 퇴직생활급여 ☑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☐ 목돈급여 ☐ 지수연동급여 | | | |
| ⑥ 회 원 번 호 | | G 1 2 3 4 5 | 일 련 번 호 | 001 | |
| | | ※ 지정· 변경을 원하는 회원번호(약정서별 일련번호)가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. | | | |
| ⑦ 지 정 | 수 급 권 자 | 성 명 | 김 선 녀 | | |
| | | 생 년 월 일 | 1958 년 1 월 1 일 | 회원과의 관계 | 배우자 |
| | 기존 수급권자 지 정 | ■ 기 지정된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를 지정합니다.<br>※ 회원 내방시 첨부서류를 생략하며, 우편발송시 관련서류 첨부 ☐ 동일지정 확인 | | | |
| | 신 규 수 급 권 자 개 인 정 보 동 의 | ■ 수집 · 이용목적 : 수급권자 지정 및 급여금 지급<br>■ 수집 · 이용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관계서류상 수집되는 정보, 녹취정보<br>■ 보유 · 이용기간 : 가입급여 해지 또는 수급권자 지정 목적 달성시까지<br>■ 동의 거부권리 :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. 다만, 정보동의 거부 시에는 수급권자 지정이 불가능합니다.<br>■ 수집 · 이용동의 여부 : 귀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☑ 동의 ☐ 미동의<br>■ 고유식별정보동의 : 귀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☑ 동의 ☐ 미동의<br>※ 수급권자 : 김선녀 (서명 또는 인) | | | |
| ⑧ 변 경 | 구 분 | 현 행 | | 변 경 | |
| | 수령방법 퇴직생활급여 분할급여금 | ☐ 매월 ☐ 매년 | | ☐ 매월 ☐ 매년 | |
| | 수령방법 목돈급여 (부가금형) | ☐ 3개월 ☐ 6개월 ☐ 12개월 | | ☐ 3개월 ☐ 6개월 ☐ 12개월 | |
| | 수 령 일 | ☐ 5일 ☐ 15일 ☐ 25일 | | ☐ 5일 ☐ 15일 ☐ 25일 | |
| | 지 급 기 간 | ☐ 5년 ☐ 10년 ☐ 15년 ☐ 20년 ☐ 25년 ☐ 30년 | | ☐ 5년 ☐ 10년 ☐ 15년 ☐ 20년 ☐ 25년 ☐ 30년 | |
| | 유 의 사 항<br>* 자세한 사항은 뒷면 참조 | • 수령방법, 수령일, 지급기간은 1회차 급여금 수령 3영업일 전에만 변경 가능.<br>• 가입 후 1년 미만 매년에서 매월로 변경 시 매월 이자율 적용<br>• 지급기간<br>- 분할급여금 : 5년~30년 5년 단위 선택 - 퇴직생활급여 확정연금형 : 5년~20년 5년 단위 선택 | | | |
| | 급여금(부가금) 수 령 계 좌 | ■ 금융기관 : _____ ■ 계좌번호 : _____ | | | |

본인은 귀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· 변경을 신청합니다. 2023 년 4 월 25 일

※ 수급권자 지정시엔 반드시 인감 날인

신청인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
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

(서식개정일자 : 2023. 04. 25)

#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유의사항 | ▶ 회원번호 기재<br>- 지정 또는 변경을 원하는 회원번호(약정서별 일련번호)를 모두 기재하십시오.<br><br>▶ 수급권자 지정<br>- 수급권자 지정대상<br>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, 목돈급여 :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<br>퇴직생활급여 :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자매, 유서에 급여에 관한 의사표시<br>- 기존 수급권자와 동일 지정<br>· 회원 내방 시 : 신분증 지참<br>· 우편 발송 시 : 관련 구비서류 모두 첨부<br>- 수급권자 지정 시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동의 및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<br>- 지정·변경신청서 하단 신청인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.<br><br>▶ 급여금 수령방법 변경<br>- 급여금 수령방법 변경은 1회차 급여금 수령 3영업일 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. 단, 급여금 수령이후 변경 시에는 제급여(목돈급여, 퇴직생활급여) 청구서를 이용하여 재가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<br>- 가입 후 1년 미만 매년에서 매월로 변경 시 매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매월로 변경처리 됩니다.<br>- 급여금 수령사항 변경이후 원금을 해약할 때 해약수수료는 최초 가입일자 기준으로 1년 미만, 1년 이상을 적용합니다.<br><br>▶ 분할급여금 지급기간 변경<br>- 분할급여금 지급기간 변경은 1회차 급여금 지급 3영업일 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 |
| 구비서류 | ■ 수급권자 지정시<br>▶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..... 1부<br>- 본인 내방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으로 대체<br>▶ 가족관계증명서(형제자매 지정 시 부 또는 모), 주민등록등본 택1 ..... 1부<br><br>■ 급여금 수령방법 및 수령일, 분할급여금 지급기간 변경시<br>▶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..... 1부<br><br>■ 급여금(부가금) 수령계좌 변경시<br>▶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..... 1부<br>▶ 은행통장 사본 ..... 1부 |

지정·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회원콜센터(1577-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The·K 한국교직원공제회

(서식개정일자 : 2023. 04. 25)

황*주/회원관리팀/20230414110730